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37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김성원 · 고동진 · 박성훈
김용태 · 박충권 · 이인선
김선교 · 정동만 · 배준영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

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한 일수(1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 후휴가 기간. <u>다만, 피보험자</u> <u>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u> <u>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u>	2. ----- ----- ----- -----. <u>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u> <u>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u> <u>닌 경우에는 그 휴가 기간 중</u> <u>20일을 초과한 일수(10일을</u> <u>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